

# 옛 문헌을 통해 본 한국인의 목욕의식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 Bathing Culture Studied via Historical Literature

-History of the Three States, Prehistory of the Three States, History of Koryo, True Records of Chosun Dynasty-

안옥희 · 김학민\* · 김현지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전공 · 김천대학 인테리어디자인과\*

An, Okhee · Kim Hakmin\* · Kim Hyunji

Dept. Family and Housing Studies, Yeungnam University · \*Dept. Interior Design, Gimcheon College

### Abstract

In this study, 2,238 incidents from History of the Three States, Prehistory of the Three States, History of Koryo, True Records of Chosun Dynasty had been analyzed in order to examine the bathing styles of Korean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In the period of Three States, baths were taken for the purposes of cleanliness, remedy, and beauty culture as well as etiquettes. And spa, rainwater, rivers, streams, and bath tubs were used. In the period of Koryo, it included not only reasons for etiquettes as in the period of the Three States but also reasons for medical care and daily life. In spa, temples, and homes, baths were taken by using perfumes and towels. In Chosun Dynasty, daily baths were for hygiene, health, and bodily charms. Before religious ceremonies, they made sure that they took baths, and spa baths were popular for the medical care. The ways to take baths included the order which area was the first to be washed, time, and areas concretely, and seasons, weather, and conditions of body were considered before taking baths. Moreover, the places included natural places such as streams, reservoirs, rivers, as well as artificial places such as temples, places for envoys, and palaces. Especially, in spa areas, bathing buildings were constructed. Considering all these, baths were taken for the purposes of ceremonies and medical care in the period of the Three States, and daily baths took down their roots in the period of Koryo. In the period of Chosun Dynasty, spa baths for cures, prays and rituals, hygiene and bodily charms were considered as a reason. How to take baths and means were decided carefully. Therefore, the results above demonstrated that baths took down their roots in people's daily life in Korea since the period of Koryo.

Key words : bathing culture, the Three States, the period of Koryo, Chosun Dynasty.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목욕(沐浴)은 머리감을 목(沐)자와 물로 몸을 씻을 육(浴)자로 이루어져 있어 머리를 감고 물로 몸을 씻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목(沐)자에는 다스린다는 의미도 있으므로 목욕은 마음을 다스리는 효과도 있는 생활행위이다. 따라서 목욕은 신체의 청결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행위이며, 목욕을 함으로써 신체의 보온, 피

로회복 등 보건위생적 측면의 효과가 있으며 기분전환, 휴식 등의 심리적인 측면의 효과가 있는 생활행위이다. 목욕을 하는 입욕방식(入浴方式)은 각 국가의 고유한 생활문화를 나타내는 행위로써 국가별로 고유의 입욕행위를 한다. 예를 들어 서구인은 욕조 속에서 몸을 씻고 샤워를 하나, 우리는 욕실에서 씻고, 욕조 속에 몸을 담근다. 이와 같이 입욕행태가 다른 이유는 목욕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다(성정원, 2000).

목욕을 하기 위해서는 생리위생공간으로서의 목욕 공간이 필요한데, 목욕공간은 다른 생활활동을 함께 하기 힘든 독자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목욕공간은 무엇보다도 그 나라의 입욕행위에 맞도록 공간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며 독립된 공간으로 확

\* Corresponding author : An, Okhee  
Tel : (053) 810-2864 Fax : (053) 816-0420  
E-mail : aohee@yumin.ac.kr

보되어져야 한다. 우리 나라는 기후, 자연경관, 종교 등의 이유로 전통주택에 욕실이라는 공간이 없었으나 (백영희, 안옥희, 2003), 현대주택에서는 매우 중요한 생활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그 형태는 서양식의 유닛형이 대부분이다(이영심, 신경주, 1995).

한국인의 목욕방식은 비누질하기→헹구기→욕조에 몸 담그기→때 밀기→비누질하기→헹구기와 같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거품이 있는 욕조 안에서 모든 목욕 행위를 마치고 나와서 그대로 몸을 닦는 서양식 목욕 행위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우리에게 있어 욕조는 단지 몸을 데우거나 때를 불리기 위해서 가끔씩 사용될 뿐이며 목욕과정의 대부분이 욕조 밖에서 이루어진다 (탁순애, 1990). 따라서 욕조가 없는 욕실을 가진 주택도 있으며, 사용빈도에 비해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욕조를 제거하는 개조행위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이희봉, 1997). 또한 유닛형의 욕실사용에 불평하는 거주자들도 많다(조명은, 1993). 이는 우리의 입욕양식과 맞지 않는 목욕공간 계획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입욕양식에 맞는 목욕 공간의 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한 선행연구로써 우리의 목욕의식이 어떠한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옛 문헌을 통하여 한국인의 목욕의식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로써,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

사,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목욕관련 내용을 분석하기로 한다. 우리역사 3대 정사(正史)는 삼국사기와 고려사, 조선왕조실록이나 삼국시대의 자료가 많이 부족하므로 삼국유사를 함께 택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는 문헌(누리미디어, 2004)에서 목욕공간과 목욕의식을 살필 수 있는 용어, 즉 목욕(沐浴), 탕목(湯沐), 온천(溫泉), 온정(溫井), 온탕(溫湯), 목욕탕(沐浴湯), 목욕통(浴桶)이 수록되어 있는 부분을 검색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내용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수록되어 있는 12건, 고려사에 수록되어 있는 60건,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되어 있는 2166건, 총 2238건이다<표 1>.

## II. 목욕의 의미와 목욕장소

### 1. 삼국시대의 목욕

삼국사기에 목욕과 온탕에 관한 내용이 총 5건이다. 이를 보면, 진덕왕 2년에 당 태종이 김춘추에게 자기가 지은 “온탕비”를 하사했다는 기록<sup>2)</sup>이 있어, 그 당시 당나라에서는 온탕(온천)의 이용을 널리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서천왕 17년(286년)에 왕의 동생인 일우, 소발이 모반하였을 때 질병을 사칭하고 온탕(溫湯)에 가서 온갖

<표 1> 자료분석 기록의 수

시대 \ 용어	목욕	탕목	온천	온정	온탕	목욕탕*	목욕통	합계(%)
삼국시대	삼국사기	3	0	0	0	2	0	0
	삼국유사	6	0	0	1	0	0	12( 0.5)
	소계	9	0	0	1	2	0	
고려시대	19	6	32	3	0	0	0	60( 2.7)
조선시대	1048	22	812	271	2	6	5	2166( 96.8)
합계(%)	1076 (48.0)	28 (1.2)	844 (37.7)	276 (12.3)	6 (0.3)	6 (0.3)	5 (0.2)	2238(100.0)

\*목욕탕, 목욕실, 목욕간, 욕실 포함

2) 삼국사기 p.40 진덕왕

무리들과 유락을 즐겼다는 기록<sup>3)</sup>이 남아 있어 고구려 인들이 온천탕을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설총 편에는 신문대왕(681-692)때 설총이 신문대왕에게 하는 우화 속에 “첩은 ~봄비로 목욕하여 때를 씻고~”라는 구절<sup>4)</sup>이 나온다. 이는 비가 오면 빗물로 목욕을 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목욕이 일상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하게 한다.

김흠운 편에는 태종무열왕 2년(655년)에 김흠운이 군사를 출동할 때 “집에서 자지도 않고 바람에 빗질하고 비에 목욕하면서 군사들과 달고 쓴 것을 같이 하였다”라는 구절<sup>5)</sup>이 나온다. 이는 군사들이 야영을 하는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욕행위를 뜻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도미 편을 보면 백제인인 도미를 범하려고 하는 왕(개루와)에게 도미가 “지금은 월경으로 온 몸이 더러우니 다른 날 깨끗이 목욕하고 오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자리를 피했다는 기록<sup>6)</sup>이 있다. 이는 생리 중에는 성행위를 하지 않으며, 목욕 후 몸을 정결히 하고 성행위를 했음을 나타낸다.

삼국유사에 목욕과 온정에 관한 내용이 총 7건인데, 목욕과 온정(溫井)을 함께 기록하여 종복되는 것이 1 건있어 분석자료는 총 6건이다. 이를 보면, 신라시조 혁거세왕 편에 박혁거세를 동천에서 씻기니 그 몸에서 광채가 났다든지 알영이 태어날 때 입술에 닦의 부리가 달려 있었으나 북천에 씻기니 부리가 떨어져 그 미모가 완연히 드러났다는 기록<sup>7)</sup>이 있다. 이는 목욕을 의식수단과 치료수단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효소왕대 죽지랑 편을 보면 더럽고 추한 것을 씻어 주려고 매우 추운 날 성안의 뜻에서 목욕을 시켰더니 얼어붙어 죽었다는 기록<sup>8)</sup>이 있다. 이때 더럽고 추한 것이란 외형적인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대한 내용이므로, 목욕을 하면 마음을 정결히 할 수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생각된다.

삼소관음 중생사 편을 보면, 절에 맡긴 아이를 다시 만나러 가니 살결이 새로 목욕함과 같고 얼굴도 좋아지고 쫀 냄새가 오히려 입에 남아 있었다는 기록<sup>9)</sup>이 있다. 이는 목욕을 하면 피부가 깨끗해진다는 청결의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남백월2성 노힐부득 달달박박 편을 보면, 산모(사실

은 관음보살)가 해산 후 목욕하기를 청하고, 노힐부득(스님)이 통을 준비하여 산모를 그 가운데 앉히고 더운물로 목욕시켰다. 그 통 속 물에 향기가 풍기고 산모가 노힐부득에게 그 물에 목욕하라고 하여 목욕하니 깨달음을 얻어 미륵존상이 되었다는 기록<sup>10)</sup>이 있다. 또한 친구인 달달박박(스님)에게도 남은 물로 목욕하라고 하여 달달박박도 목욕하니 똑같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출산 후 목욕하는 풍습이 있음과 목욕을 하면 깨달음에 달한다는 인식을 한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영취사 편을 보면, 재상이 온천(溫井)에서 목욕을 하고 환성(還城)했다는 기록<sup>11)</sup>이 있음으로 온천 목욕을 하러 먼 거리를 여행했음을 알 수 있다.

의상전교 편을 보면, 목욕하고 선사의 특몽(特夢)으로 오전(奧典; 법전)을 받았다는 기록<sup>12)</sup>이 있다. 이는 중대한 일을 할 때 의식행사로 목욕을 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기록된 목욕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온천(온탕)을 이용했다, 생리나 출산 후에 청결을 위해 목욕을 했다, 목욕을 하면 육체의 결점이 치유된다, 목욕을 하면 피부가 깨끗해진다, 목욕을 하면 마음을 정결히 할 수 있다, 큰 일을 위해서는 목욕한다는 등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목욕하여 신체를 청결하게 함으로써 마음도 단정하여진다는 불교의 목욕재계의 의미와 영육일치사상이 부합되는 것(전완길, 1995)으로 사료된다. 즉 삼국시대에는 목욕을 청결, 치료, 미용의 목적과 의례적 행위로서 행하였으며, 온천, 빗물, 강, 뜬, 목욕통을 이용하여 목욕하였음을 알 수 있다.

## 2) 고려시대의 목욕

고려사에 목욕, 탕목, 온천, 온정에 관한 내용은 총 60건이다. 이 중 목욕은 19건, 탕목은 6건, 온천은 32건, 온정은 3건이며, 온천과 목욕이 함께 언급된 것이 4건이다. 기록의 수를 보면 목욕행위에 관한 용어인 목욕과 탕목에 대한 내용보다 목욕장소에 해당되는 용어인 온천과 온정에 대한 내용이 약 1.5배정도 많은데, 이는 ‘온정’이라는 지명이 있어 목욕행위와 직접 관련

3) 삼국사기 p.107 서천왕

4) 삼국사기 p.280 설총

5) 삼국사기 p.289 김흠운

6) 삼국사기 p.306 도미

7) 삼국유사 p.52 신라시조 혁거세왕

9) 삼국유사 p.73 효소왕대 죽지랑

9) 삼국유사 p.115 삼소관음 중생사

10) 삼국유사 p.120 남백월2성 노힐부득 달달박박

11) 삼국유사 p.131 영취사, 이 기록에는 목욕, 온정이 모두 언급되어 있음.

12) 삼국유사 p.141 의상전교

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지명이나 충복된 내용, 목욕의식을 알 수 없는 내용(36건)은 제외하고 목욕의식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26건)에 대해서만 분석하기로 한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고종 갑인 42년(1254) 편에 “비서성(秘書省)에서는 재 올리고 기도를 하며 제향을 치르는 문부를 맡았기 때문에 매월 한사람씩 들어가 지키면서 목욕재계를 하고 고기 반찬을 먹지 않고 있다가 그 달을 채우고야 나오는 것인데~(중략)”라는 내용<sup>13)</sup>이 있다. 이로서 기도 드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목욕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원종 경신 원년(1260) 편을 보면, 지방 관리가 왕을 영접하여 온천에 목욕하기를 청하니 왕이 사양하면서 “여기는 당나라 명황이 목욕하던 곳인데 후세의 사람이라 하지마는 내가 어찌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니 듣는 사람들이 왕의 예의를 탄복하였다는 내용<sup>14)</sup>이 있다. 이는 온천에서의 목욕이 영접의 행위로 이용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충렬왕 을유 11년(1285) 편을 보면, 정월에 왕이 평주에 사냥하러 가서 온천에 목욕하였다고 하고, 11월에 왕이 평주 온천에 갔다고 기록<sup>15)</sup>되어 있다. 이는 1년에도 2번씩 온천에 갔다는 것으로 온천 목욕이 일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아주 특별한 일도 아니다는 것을 나타낸다.

충숙왕 무인 후 7년(1338) 편을 보면, 등암사에서 왕이 목욕 중이라 사절단을 만나지 않았다는 기록<sup>16)</sup>이 있다. 이는 절에서 목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음을 나타낸다. 충숙왕 기묘 후 8년(1339) 편을 보면, 기묘 후 8년 봄에 왕이 침전에서 죽었다고 기록하면서 왕이 성질이 깨끗한 것을 좋아하여 한달 목욕하는 비용으로 여러 가지 향(香)이 10여 동이(盆)나 되었으며 모시 베가 60여 필이나 되었는데 이것은 수건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기록<sup>17)</sup>이 있다. 이는 왕이 일상적으로 목욕을 했으며, 향을 사용한 향 목욕을 한 것으로 보이며, 모시로 수건을 만들어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목 편을 보면, 현종 15년(1024)에 가뭄이 심하여 왕이 새벽에 일어나 식사 때에 반찬을 감하고 목욕재계

한 후 향불을 피우고 궁궐 앞뜰에 나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빌었다는 기록<sup>18)</sup>이 있다. 이는 기원을 하기 전에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기 위해 목욕을 하였음을 나타낸다.

왕태자의 혼례의식 편을 보면, 태자비가 왕을 배알하는 예식을 하는 날 일찍 일어나 깨끗이 목욕하고 의례를 갖추어 대궐로 향했다는 기록<sup>19)</sup>이 있다. 이는 의례 전에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기 위해 목욕을 하였음을 나타낸다.

관리 급가 편을 보면, 병든 부모가 온천에 목욕하러 가게 될 때에는 거리의 멀고 가까움을 타산하여 관리에게 휴가를 주게 하였다라는 기록<sup>20)</sup>이 있다. 이는 민가에서도 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온천 목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왕순식 등 편을 보면, 성주가 전쟁에 출정하려고 목욕을 했다는 기록<sup>21)</sup>이 있다. 이는 큰 일을 도모하기 전에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기 위해 목욕을 하였음을 나타낸다.

홍자번 편을 보면 홍자번은 성질이 깨끗한 것을 좋아하여 하루에도 목욕을 두 번씩이나 하는 때도 있었다는 기록<sup>22)</sup>이 있다. 이는 일반 백성의 집에서 목욕을 일상적으로 할 수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조년 편을 보면, 이조년이 원나라 왕에게 직접 편지를 전하는 일을 하자 밤중에 일어나 목욕하고 닦이 옷자 떠나려고 했다는 기록<sup>23)</sup>이 있다. 이는 전쟁에 나가는 장군과 같은 비장한 결심을 하고 이를 결행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기 위해 목욕을 하였음을 나타낸다.

윤소종 편을 보면, 윤소종이 왕에게 축문(祝文), 사소(銅疏)에는 반드시 목욕 재계하고 친히 서명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를 왕이 받아 들였다는 기록<sup>24)</sup>이 있다. 이는 왕도 중요한 일을 할 때에는 목욕하여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신우 갑자 10년(1384) 편을 보면, 왕이 궁녀들과 회통질하면서 목욕을 하였다거나 귀법사의 남천에서 궁녀들과 같이 목욕을 하면서 갖은 읊탕한 행동을 하였다는 기록<sup>25)</sup>이 있다. 이는 목욕을 성행위의 수단으로 이용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 13) 고려사 p.395 고종 갑인 41년
- 15) 고려사 p.403 원종 경신 원년
- 15) 고려사 p.442 충렬왕 을유 11년
- 16) 고려사 p.503 충숙왕 무인 후 7년
- 17) 고려사 p.504 충숙왕 기묘 후 8년
- 18) 고려사 p.629 목
- 19) 고려사 p.882 왕태자의 혼례의식
- 20) 고려사 p.1357 관리 급가
- 21) 고려사 p.1620 왕순식 등
- 22) 고려사 p.1825 홍자번
- 23) 고려사 p.1883 이조년

한언공 편을 보면, 한언공이 병에 걸리자 왕이 의약과 수레 두 대를 주어 온천에 가서 요양하게 하였다는 기록<sup>25)</sup>이 있다. 이는 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온천 목욕을 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상의 고려사에 기록된 목욕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목욕재계하고 기원을 하거나 큰일을 도모하였다, 목욕이 접대행위나 성행위의 수단이 된다, 온천 목욕은 치료효과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등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삼국시대의 목욕의식을 포함하면서 접대나 성행위의 수단으로 목욕행위를 인식하는 등 보다 일상생활 행위로서 목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온천, 절, 집에서 목욕하고 향과 수건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삼국시대의 기록과는 달리 자연상태로서의 물을 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장소와 목욕재료를 알 수 있는 기록으로 의례적이고 치료목적의 목욕행위가 일상적인 생활행위로 자리 잡았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 3. 조선시대의 목욕

#### 1) 일반적인 경향

조선왕조실록에 목욕(탕목, 온천, 온정, 목욕탕, 목욕통)에 관한 내용은 총 2166건이다. 이 중 목욕은 1048건, 탕목(湯沐)은 22건, 온천은 812건, 온정은 271건, 온탕 2건, 목욕탕 6건, 목욕통 5건이다. 비록 중복된 기록이 있다고는 하나 이는 고려에 비해 목욕을 언급한 내용의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또한 고려사에서 목욕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보다 목욕장소에 해당되는 내용이 더 많았던 것과는 달리 목욕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의 비중이 늘어나, 목욕행위와 목욕장소의 비율이 절반정도로 비슷하다.

조선왕조실록의 분석자료의 수는 <표 2>에 정리하였다. 조선시대의 시대구분은 전기-중기-후기, 전기-후기, 전기-중기-후기-말기 등 학자나 학문에 따라 분류방법이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사(建築史)분야에서 많이 택하는 시대구분 방법(윤장섭, 2002)인 전기-중기-후기로 구분하면서 왕조의 구분을 고려하여 약간 수정한 구분방법을 택하였다. 즉 전기는 태조(1392년)부터 임진왜란(1592년)까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1592년은 선조25년에 해당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조 말년(1608년)까지를 전기로 보기로 한다. 조선 중기는

1592년부터 경종 말년(1724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전기의 구분을 수정하였으므로 광해군(1608년)부터 경종 말년(1724년)으로 보기로 한다. 후기는 영조(1725년)부터 순조 말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연구에서는 순조 이후의 현종, 철종<sup>27)</sup>까지를 모두 포함하여 영조(1725년)부터 철종 말년(1863년)까지로 보기로 한다. 이러한 구분으로 분석자료의 수를 연대별로 보면, 전기(985건)와 중기(917건)의 수가 비슷하며, 후기(264건)의 수가 적다. 그러나 전기는 216년간, 중기는 116년간임을 고려하면 중기에 목욕관련 기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전기에 해당되는 선조와 중기에 해당되는 현종, 숙종, 경종은 수정실록이 있다<sup>28)</sup>는 사실을 고려하여 한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선조수정실록(4건), 현종개수실록(384건), 숙종실록보궐정오(4건), 경종수정실록(4건)에 실린 396건을 제외하면 조선전기의 목욕관련 기록의 수는 981건, 중기는 525건이 되며, 이를 기간을 함께 고려하면 조선시대의 전기와 중기의 목욕관련 기록의 수는 비슷하며, 후기의 기록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하의 분석에서는 수정실록이 있어 중첩된 기록은 제외하기로 한다.

조선왕조실록에서 가장 많은 목욕관련 기록을 남긴 왕은 세종대왕으로 세종실록에는 목욕관련 359건의 기록이 있다. 그러나 세종은 32년간 재위하였는데 왕의 재위년수가 길수록 기록의 수가 많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년간 평균기록 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왕조실록이 기록된 기간은 472년이며, 중복된 기록을 제외한 목욕관련 기록의 수는 1770건이므로 년간 평균기록 수는 3.75건이다. 이 평균 건수보다 많은 기록을 남긴 왕은 태조,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현종, 정조로 주로 조선 전기에 재위한 왕이며, 평균 재위년수(18.8년)보다 오랜 기간을 재위한 왕은 세종(32년)과 정조(24년) 뿐이다. 따라서 재위기간이 길다고 목욕관련 기록을 많이 남겼다고는 볼 수 없다.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목욕관련 기록의 수는 모두 2166건이나 수정실록에 실려 중복 된 수(396건)를 제외하면 1770건이다. 1770건의 기록내용을 분석한 결과, 단순히 지명을 나타내거나 구체적인 목욕의식을 알 수 없는 것, 용어간에 중복된 것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구체적인 목욕의식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목욕 428건, 탕목 9건, 온천 358건, 온정 168건, 온탕 2건, 목욕탕 6건, 목욕통 5건으로 총 976건이므로, 이하의 분석에서는 이에 대해서만 분석하기로 한다.

25) 고려사 p.2215 신우 갑자 10년

26) 고려사 p.1629 한언공

27) 조선왕조실록은 철종까지의 기록으로 조선왕조의 마지막 왕인 고종에 대한 기록은 없다.

28) 선조는 재위기간이 41년이나 되었는데 선조수정실록이 있어 그 기록의 수가 배가 되며, 현종실록은 현종개수실록, 숙종실록보궐정오, 경종실록은 경종수정실록이 있어 그 기록의 수가 배가 된다.

## 2) 목욕의 종류

목욕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치료를 위한 온천욕, 기도나 의례를 위한 목욕, 일상적 목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조선왕조실록은 왕실의 기록이므로 온천욕과 기도나 의례를 위한 목욕에 대한 기록이 많으며, 일상적 목욕에 대한 기록은 적다.

일상적 목욕에 대한 기록은 온천욕이나 의례를 위한 목욕에 비해 그 수가 많지 않으며, 구체적인 목욕 행위에 대해서도 잘 기록되어 있지 않다.

세종실록에 예조판서가 사직하기를 청하면서 올린 글을 보면 “침을 맞고 뜸질을 하며, 목욕을 하여가면서 병을 고쳐 볼까 하오니~(중략)”라는 기록<sup>29)</sup>이 있는데 비록 온천에 간다는 내용은 없으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직하면서까지 목욕하기를 원했다는 것은 온천욕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제주에서 나병(癰病)이 유행하여 병을 치료하는 장소를 설치하고 병자를 모아서 의복, 식량, 약물(藥物)을 주고 또 목욕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의생(醫生)과 중들로 하여금 맡아 감독하여 치료하게 하는데 나병환자 69인 중에서 45인이 나았다

<표 2> 조선왕조실록 분석자료

연도	용어	목욕	탕목	온천	온정	온탕	목욕탕	목욕통	계(평균)*	합계
전기 (216년)	태조 7년	4	1	23	1	0	0	0	29(4.14)	985 (-4)
	정종 2년	3	0	8	5	0	0	0	16(8.00)	
	태종 18년	16	7	21	23	0	0	0	67(3.72)	
	세종 32년	167	1	104	82	0	4	1	359(11.22)	
	문종 2년	18	0	5	3	0	1	0	27(13.50)	
	단종 3년	22	0	9	16	0	0	0	47(15.67)	
	세조 14년	69	0	26	63	1	0	0	159(11.35)	
	예종 1년	8	0	4	1	0	0	0	13(13.00)	
	성종 25년	59	0	17	13	1	1	0	91(3.64)	
	연산군 12년	30	0	0	2	0	0	2	34(2.83)	
	중종 39년	45	1	4	10	0	0	0	60(1.54)	
	인종 1년	3	0	0	0	0	0	0	3(3.00)	
	명종 22년	21	0	1	1	0	0	0	23(1.05)	
	선조 41년	37 (- 3)	2	8 (- 1)	10	0	0	0	57(1.29) (-4)	
중기 (116년)	광해군 15년	69	0	5	1	0	0	0	75(5.00)	917 (-392)
	인조 27년	17	0	1	3	0	0	0	21(0.78)	
	효종 10년	19	0	1	1	0	0	0	21(2.10)	
	현종 15년	201 (-112)	0	415 (-268)	8 (-4)	0	0	0	624(16.00) (-384)	
	숙종 46년	71 (- 2)	3	67 (- 2)	16	0	0	2	159(3.37) (-4)	
	경종 4년	10 (- 2)	1	6 (- 2)	0	0	0	0	17(3.25) (-4)	
후기 (138년)	영조 52년	66	0	60	4	0	0	0	130(2.50)	264
	정조 24년	58	6	27	5	0	0	0	96(4.00)	
	순조 34년	32	0	0	3	0	0	0	35(1.03)	
	현종 15년	2	0	0	0	0	0	0	2(0.13)	
	철종 14년	1	0	0	0	0	0	0	1(0.07)	
	합계	1048 (-119)	22	812 (-273)	271 (-4)	2	6	5	2166(3.75) (-396)	

\* ( )는 년간 평균 기록 수이며 여기에는 수정실록에 실린 수는 제외하였다.

29) 조선왕조실록 3집 7면, 세종실록.

는 기록<sup>30)</sup>이 있다. 이는 비록 온천욕이 아니라도 목욕이 치료를 위해 행해졌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죄수들이 질병에 걸려 생명을 잃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옥의 관리 조건을 정하고 있는데 옥의 관리 조건 5개 조건 중 3개 조건이 목욕에 관련된 것<sup>31)</sup>이다. 즉 5월에서 7월 10일까지는 한 차례 자원에 따라 몸을 씻게 할 것, 매월 한 차례 자원에 따라 두발을 감게 할 것, 목욕할 때에는 관리와 옥졸(獄卒)이 친히 스스로 감찰하여 도망하는 것을 막을 것이다. 이를 보면, 죄수라 하더라도 한 달에 한번은 머리를 감고, 따뜻한 계절에는 몸을 씻게 하는 것은 위생적인 생활을 위한 최소 한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성종실록에 보면, 중국사신과 원접사(遠接使)가 나눈 대화가 기록<sup>32)</sup>되어 있다. 이를 보면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라는 중국 책에 조선에서는 부자(父子)가 같은 내에서 목욕한다고 적혀 있으나 이는 고사(古史)의 말이고 지금은 그렇지 않으므로 이를 고쳐달라고 하자, 중국사신이 조선의 미풍(美風)을 기록해 주면 이를 중국의 실록을 수찬(修撰)할 때 고치겠다고 하였다. 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성종 이전에는 부자가 같은 내에서 목욕을 하였으나 성종 때

에는 부자가 같은 내에서 목욕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일상적인 목욕은 위생적인 측면, 건강을 위한 측면, 몸단장을 위한 경우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도나 의례를 위한 목욕은 매우 많이 언급되어 있다. 특히 세종실록의 부록으로 오례(五禮)가 기록되어 있는 데, 길례(吉禮), 가례(嘉禮), 빈례(賓禮), 군례(軍禮), 흥례(凶禮) 중 목욕에 대한 기록이 길례에 25건, 흥례에 16건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목욕재계(沐浴齋戒)의 의미로써 머리와 몸을 씻고 마음을 가다듬어 부정한 것을 물리치려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성종실록을 보면, “제사를 봉행하는 것은 신명(神明)과 서로 접하는 것이다. 정결하게 세척하여 성과 경을 극진하게 다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제부터 크고 작은 향사(享祀)에 모든 향관에게 신칙(申勅)하여 목욕재계한 연후에 제사를 받들도록 하라”고 기록<sup>33)</sup>되어 있다. 즉 제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목욕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의례나 기도를 위한 목욕은 건축물의 공사<sup>34)</sup>, 신이나 조상에 대한 제사나 기도<sup>35)</sup>, 상소나 글을 올리거나 임금을 만나거나 임금으로부터 업무를 명 받아 수행할 때<sup>36)</sup>, 죄를 청할

30) 조선왕조실록 4집 644면, 세종실록.

31) 조선왕조실록 5집 96면, 세종실록.

32) 조선왕조실록 11집 314면, 성종실록

33) 조선왕조실록 12집 472면, 성종실록

34) 조선왕조실록 1집 72면, 태조실록.

35) 조선왕조실록 1집 142면, 태조실록,

조선왕조실록 2집 359면, 3집 78면, 4집 606면 세종실록,

조선왕조실록 7집 156면 세조실록,

조선왕조실록 8집 463면, 10집 582면, 12집 282면 성종실록,

조선왕조실록 14집 331면, 14집 648면, 16집 144면, 16집 452면, 16집 631면, 17집 371면 중종실록,

조선왕조실록 19집 198면 인종실록,

조선왕조실록 33집 282면 광해실록,

조선왕조실록 34집 50면, 34면 426면, 34집 503면, 35집 301면 인조실록,

조선왕조실록 38집 667면, 38집 668면, 38집 669면, 39집 128면 숙종실록,

조선왕조실록 42집 256면, 42집 326면, 42집 492면, 43집 516면, 43집 609면, 43집 682면, 44집 381면, 영조 실록,

조선왕조실록 45집 312면, 45집 641면, 46집 288면, 46집 511면, 정조실록.

36) 조선왕조실록 1집 501면, 태조실록,

조선왕조실록 2집 248면, 태종실록,

조선왕조실록 4집 1면, 세종실록,

조선왕조실록 6집 451면, 문종실록,

조선왕조실록 8집 694면, 성종실록,

조선왕조실록 17집 126면, 중종실록,

조선왕조실록 21집 15면, 명종실록,

조선왕조실록 23집 598면, 23집 621면, 24집 239면, 선조실록,

조선왕조실록 32집 20면, 32집 37면, 32집 55면, 32집 64면, 32집 78면, 32집 89면, 32집 96면, 32집 130면, 32집 179면, 32집 231면, 32면 393면, 32집 474면, 32집 528면, 32집 541면, 32집 629면, 33집 130면, 33집 152면, 33집 274면, 33집 377면, 33집 382면, 33집 469면, 3집 473면, 광해실록, 조선왕조실록 34집 252면, 35집 300면 인조실록,

조선왕조실록 38집 439면, 40집 302면, 숙종실록,

조선왕조실록 41집 171면, 41집 227면, 41집 230면, 41집 266면, 경종실록, 41집 349면 경수실록,

조선왕조실록 41집 456면, 41집 461면, 41집 520면, 41집 524면, 41집 557면, 41집 558면, 41집 559면, 41집 662면, 43집 581면, 43집 582면, 44집 590면, 44집 462면, 영조실록,

조선왕조실록 44집 566면, 44집 582면, 44집 584면, 44집 691면, 45집 56면, 45집 236면, 45집 317면, 45집 318면, 45집 531면, 45집 619면, 45집 623면, 45집 641면, 45집 694면, 46집 666면, 46집 671면, 47집 342면, 정조실록,

조선왕조실록 47집 344면, 48집 39면, 48집 292면, 48집 297면 순조실록.

때<sup>37)</sup>, 시신을 염할 때나 장례의례 때<sup>38)</sup>, 죽음을 앞두었을 때<sup>39)</sup>, 잔치를 할 때<sup>40)</sup>, 생명이 탄생했을 때<sup>41)</sup>, 부처에게 절할 때<sup>42)</sup> 목욕을 하였으며, 목욕을 하는 예법<sup>43)</sup>을 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연산실록<sup>44)</sup>이나 중종실록<sup>45)</sup>을 보면 왕이 제삿날에 임해서는 날씨가 추워서 목욕하기 어렵다고 평계를 삼는 일이 많아 경우에 따라서는 목욕하지 않고 제사를 지내도 된다고 기록한 것도 있다. 즉 “옛사람이 말하기를 대략 자신이 깨끗하다면 비록 목욕치재(沐浴致齋)하지 않더라도 거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대부가 선조를 제사지내는데 만약 차가운 날씨를 만난

다면 어찌 모두 다 목욕하겠습니까?”하였다<sup>46)</sup>. 즉 임금도 날씨가 추우면 목욕하기가 불편할 만큼 목욕시설이 미흡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에는 제례 전에 반드시 목욕재계하였으므로(동서문화, 1995) 기도나 의례를 위한 목욕은 일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온천목욕에 대한 내용은 매우 많다. 온천(온정, 온탕)은 임금을 비롯하여 일반백성까지 여러 사람들이 이용<sup>47)</sup>하였다. 임금이 온천에 머물 때나 온천에서 궁궐로 돌아온 뒤에는 온정 부근의 백성들과 온정을 관리하는 관리

- 37) 조선왕조실록 2집 62면 태종실록,  
조선왕조실록 19집 532면 명종실록,  
조선왕조실록 23집 612면, 25집 392면, 선조실록,  
조선왕조실록 31집 313면, 31집 314면, 32집 245면, 33집 296면, 광해실록,  
조선왕조실록 39집 357면, 39집 423면, 39집 605면, 숙종실록,  
조선왕조실록 41집 185면 경종실록,  
조선왕조실록 42집 262면, 42집 546면, 42집 547면, 42집 642면, 43집 103면, 43집 215면, 43집 228면, 43집 260면, 43집 370면, 43집 636면, 44집 516면, 영조실록,  
조선왕조실록 44집 545면, 44집 597면, 44집 599면, 44집 657면, 45집 41면, 45집 236면, 정조실록,  
조선왕조실록 47집 539면, 48집 269면 순조실록.
- 38) 조선왕조실록 2집 171면 태종실록,  
조선왕조실록 2집 359면, 2집 386면, 2집 481면, 2집 500면, 3집 658면, 4집 596면, 4집 658면, 세종실록,  
조선왕조실록 8집 270면, 8집 304면, 예종실록,  
조선왕조실록 8집 441면, 성종실록,  
조선왕조실록 20집 291면, 명종실록,  
조선왕조실록 22집 12면, 25집 394면, 선조실록,  
조선왕조실록 31집 259면, 31집 282면, 광해실록,  
조선왕조실록 39집 605면, 41집 103면, 숙종실록,  
조선왕조실록 41집 326면, 경종실록,  
조선왕조실록 42집 91면, 42집 213면, 43집 438면, 44집 535면, 영조실록,  
조선왕조실록 45집 567면, 47집 287면, 정조실록,  
조선왕조실록 47집 498면, 48집 86면, 48집 172면, 48집 344면, 48집 417면, 48집 419면, 순조실록,  
조선왕조실록 48집 537면, 현조실록,  
조선왕조실록 48집 614면 철종실록.
- 39) 조선왕조실록 4집 327면 세종실록,  
조선왕조실록 6집 510면 단종실록,  
조선왕조실록 9집 167면 성종실록,  
조선왕조실록 24집 377면 선조실록,  
조선왕조실록 34집 218면 인조실록,  
조선왕조실록 36집 579면 현종실록, 37집 609면 현개실록,  
조선왕조실록 43집 420면 영조실록.
- 40) 조선왕조실록 6집 546면 단종실록,  
조선왕조실록 13집 177면 연산실록.
- 41) 조선왕조실록 13집 534면 연산실록.
- 42) 조선왕조실록 14집 338면 중종실록.
- 43) 조선왕조실록 3집 424면 세종실록,  
조선왕조실록 7집 294면, 7집 620면, 세조실록,  
조선왕조실록 8집 408면 예종실록,  
조선왕조실록 23집 499면 선조실록,  
조선왕조실록 31집 457면, 31집 473면 광해실록,  
조선왕조실록 35집 566면 효종실록,  
조선왕조실록 36집 515면, 현종실록, 37집 440면 현개실록,  
조선왕조실록 38집 419면, 40집 189면, 숙종실록,  
조선왕조실록 41집 630면, 41집 649면, 42집 293면, 44집 381면, 영조실록,  
조선왕조실록 44집 667면, 45집 374면, 46집 572면, 47집 87면, 46집 572면, 정조실록.
- 44) 조선왕조실록 13집 462면, 13집 274면, 13집 287면, 13집 459면, 13집 460면, 13집 537면, 연산실록.
- 45) 조선왕조실록 16집 93면, 16집 499면, 17집 468면, 중종실록.
- 46) 조선왕조실록 13집 462면, 연산실록.

들이나 함께 간 사람들에게 상을 내렸다는 기록<sup>48)</sup>이 여러 차례 나타난다. 이는 임금님의 행차에 민폐를 끼치지 않겠다<sup>49)</sup>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임금이나 왕족, 양반들이 온정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백성과 관리들이 매우 불편했고 실제로 피해도 있음<sup>50)</sup>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백성들은 온정이 있는 곳을 잘 알리지 않으려고 하였고<sup>51)</sup>, 조정에서는 온정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sup>52)</sup>을 알 수 있다. 목욕장소로서의 온천에 대한 내용은 후술하는 목욕장소와 도구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조선시대에는 온천이용이 아주 일반적이었다. 임금이 온천으로 행차하거나 돌아 올 때에는 세자가 백관을 거느리고 전송을 하거나 태상왕이나 삼대비가 온정에 갈 때에는 임금이 전송하기도 하고 심지어 신하가 온정에 갈 때에도 임금이나 세자가 전송하였다<sup>53)</sup>. 그리고 임금이 온정에 오갈 때에도 신하들에게 묻고 날짜를 정하며 종묘에 고하고<sup>54)</sup> 군사와 왕족, 신하들을 이끌고<sup>55)</sup> 온정에 가서<sup>56)</sup>, 목욕은 물론이고 휴식<sup>57)</sup>, 잔치<sup>58)</sup>, 사냥<sup>59)</sup>, 의례<sup>60)</sup>, 업무<sup>61)</sup> 등을 하였으며, 대궐로 돌아오면 이를 축하하는 잔치를 벌이기<sup>62)</sup>도 하였다.

- 48) 조선왕조실록 2집 314면, 3집 464면, 3집 465면, 4집 466면, 4집 467면, 4집 468면, 세종실록,  
조선왕조실록 36집 549면, 36집 642면, 현종실록, 37집 463면, 37집 468면, 37집 514면, 37집 526면, 37집 535면, 37집 543면 현개실록,  
조선왕조실록 40집 636면, 40집 641면, 40집 644면, 숙종실록,  
조선왕조실록 43집 383면, 43집 550면, 영조실록,  
조선왕조실록 46집 90면, 46집 628면, 46집 636면, 46집 640집, 46집 675면, 정조실록.
- 49) 조선왕조실록 1집 214면, 태종실록,  
조선왕조실록 2집 303면, 세종실록,  
조선왕조실록 2집 429면, 태조실록,  
조선왕조실록 3집 437면, 3집 443면, 4집 266면, 4집 272면, 4집 336면, 4집 404면, 4집 448면, 4집 457면, 세종실록,  
조선왕조실록 7집 702면, 7집 600면, 세조실록,  
조선왕조실록 36집 462면, 36집 464면, 36집 468면, 현종실록,  
조선왕조실록 42집 680면, 43집 354면, 44집 359면, 영조실록,  
조선왕조실록 46집 84면, 정조실록.
- 50) 조선왕조실록 1집 650면, 태종실록,  
조선왕조실록 4집 369면, 4집 460면, 4집 465면, 4집 468면, 4집 506면, 세종실록,  
조선왕조실록 9집 437면, 9집 445면, 성종실록,  
조선왕조실록 14집 332면, 14집 530면, 15집 185면, 중종실록,  
조선왕조실록 36집 612면, 현종실록,  
조선왕조실록 38집 396면 숙종실록.
- 51) 조선왕조실록 3집 612면, 4집 172면, 4집 181면, 4집 334면, 4집 492면, 5집 20면, 세종실록,  
조선왕조실록 8집 16면, 세조실록.
- 52) 조선왕조실록 3집 603면, 4집 170면, 4집 184면, 4집 188면, 4집 259면, 4집 330면, 4집 333면, 4집 369면, 4집 396면, 4집 437면, 4집 441면, 4집 448면, 4집 457면, 4집 492면, 세종실록,  
조선왕조실록 7집 659면, 8집 17면, 8집 52면, 8집 57면, 8집 161면, 8집 162면, 8집 168면, 세조실록.
- 53) 조선왕조실록 1집 27면, 1집 29면, 태조실록,  
조선왕조실록 1집 184면, 정종실록,  
조선왕조실록 1집 213면, 1집 335면, 1집 336면, 1집 376면, 세조실록,  
조선왕조실록 1집 602면, 1집 688면, 태종실록,  
조선왕조실록 2집 429면, 세종실록,
- 54) 조선왕조실록 36집 455면, 36집 457면 현종실록, 37집 283면 현개실록,  
조선왕조실록 40집 634면, 40집 635면, 40집 639면, 40집 642면, 숙종실록.
- 55) 조선왕조실록 1집 26면, 1집 42면, 1집 117면 태조실록,  
조선왕조실록 3집 430면, 3집 436면, 3집 453면, 4집 400면, 4집 403면, 4집 404면, 4집 405면 세종실록,  
조선왕조실록 36집 457면, 36집 621면 현종실록, 37집 503면 현개실록.
- 56) 조선왕조실록 36집 462면 세종실록에 온천행차에 대하여 잘 기록되어 있다. 즉 “온수현 온천에 행차할 새 왕세자 이하 종친, 부마 및 의정부, 육조, 대간 등에서 각 한 사람과 도진무, 각위 절제사, 사복제조 등이 호종하고 유도하는 백관들이 흥인문 밖에서 전송하였다. 중궁이 떠날 제 내명부에서 척리까지 모두 시위하여 흥인문 밖에서 전송하였다. 중궁은 연을 타고 숙의는 교자를 타고, 소용, 숙용 두 부인과 궁인 이하는 모두 말을 탔다”고 기록하고 있다.
- 57) 조선왕조실록 2집 216면 태종실록,  
조선왕조실록 8집 159면 세조실록,  
조선왕조실록 23집 499면 선조실록.
- 58) 조선왕조실록 4집 400면, 4집 405면 세종실록.
- 59) 조선왕조실록 1집 184면, 태조실록,  
조선왕조실록 1집 662면, 1집 689면 태종실록,  
조선왕조실록 8집 166면 세조실록.

왕족이나 신하가 온정에 갈 때에는 임금에게 고하였으며, 임금은 특별히 필요한 물품을 따로 내리거나 지방 관리에게 잘 보살피라고 당부를 한다<sup>63)64)</sup>. 즉 임금의 온정 나들이는 연중행사로 자리잡고 있는데, 현종실록에 임금의 온천 행사에 수행한 사람들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sup>65)</sup>되어 있다. 즉 현종이 현종6년 4월 17일에 온양온천으로 거동하였는데, 영의정, 우의정, 병조판서, 호조판서, 이조판서, 한성부 판윤, 지사, 예조참판, 대사간, 도승지, 좌승지, 우승지, 동부승지, 교리, 부수찬, 집의, 지평, 정언 등이 각사의 관원과 종반 승선군 등 8인, 의빈 익평위 등 5인, 친의 등 4인, 약의 등과 더불어 따라 갔으며, 영풍군 등 형제 4인도 자원하여 어

가를 수행하였다. 무예별감 30인, 어영군 1천 2백 명, 기병 50명, 군뢰와 잡색이 합해 4 백 명이었는데, 대장과 중군이 이끌고 금군 5백 명은 별장이 이끌고 마병 4백 70명과 포수 8백 명은 별장이 이끌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규모 행사임으로 이로 인해 임금의 업무수행이 부실함을 걱정하여 임금이 온정으로 갈려고 하는 것을 만류하기도 하고 홍년이 들거나 하면 목욕 행사를 정지<sup>66)</sup>하기도 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이 온정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도 죄를 묻거나 만류<sup>67)</sup>하였다. 그리고 임금이 온천으로 거동하고 나면 서울에 남아 지키는 모든 관원은 융복(戎服)으로 갈아입어 임금이 궁

- 60) 조선왕조실록 4집 404면, 4집 405, 4집 407면 세종실록,  
 조선왕조실록 21집 558면 선조실록,  
 조선왕조실록 36집 459면, 36집 461면, 36집 503면, 36집 516면, 36집 517면, 36집 551면, 36집 589면 현종실록, 37집 511면 현개실록.  
 조선왕조실록 40집 639면, 40집 640면 숙종실록,  
 조선왕조실록 44집 41면, 43집 379면, 44집 41면 영조실록.
- 61) 조선왕조실록 1집 29면 태조실록,  
 조선왕조실록 2집 215면 태종실록,  
 조선왕조실록 4집 400면 세종실록,  
 조선왕조실록 8집 160면 세조실록,  
 조선왕조실록 9집 259면 성종실록,  
 조선왕조실록 33집 145면 광해실록,  
 조선왕조실록 36집 516면, 36집 548면 현종실록, 37집 444면, 37집 505면, 37집 511면, 37집 661면 현개실록,  
 조선왕조실록 40집 606면, 40집 652면, 40집 657면 숙종실록.
- 62) 조선왕조실록 7집 705면 세조실록,  
 조선왕조실록 10집 451면 성종실록,  
 조선왕조실록 36집 517면 현종실록.
- 63) 조선왕조실록 1집 147면 태조실록,  
 조선왕조실록 2집 111면 태종실록,  
 조선왕조실록 2집 303면, 2집 429면, 4집 249면, 4집 272면 세종실록,  
 조선왕조실록 7집 113면, 7집 258면, 7집 261면, 7집 284면, 7집 285면, 7집 286면, 7집 289면, 7집 290면, 7집 302면, 7집 313면, 7집 341면, 7집 342면, 7집 453면, 7집 485면, 7집 527면, 8집 5면, 8집 169면, 8집 170면 세조실록,  
 조선왕조실록 8집 348면, 8집 400면 예종실록,  
 조선왕조실록 8집 478면, 9집 631면, 10집 554면, 11집 431면, 성종실록,  
 조선왕조실록 13집 573면, 13집 652면, 연산실록,  
 조선왕조실록 20집 649면 명종실록,  
 조선왕조실록 22집 573면 선조실록,  
 조선왕조실록 32집 31면, 33집 404면, 33집 452면, 33집 463면, 33집 464면, 광해실록,  
 조선왕조실록 35집 569면 효종실록,  
 조선왕조실록 36집 479면, 36집 481면, 36집 640면 현종실록, 37집 246면, 37집 511면, 38집 76면 현개실록,  
 조선왕조실록 39집 269면 숙종실록,  
 조선왕조실록 41집 302면 경종실록,  
 조선왕조실록 41집 628면 영조실록,  
 조선왕조실록 47집 597면 순조실록.
- 64) 임금이 온천에 가는 왕족이나 신하에게 내린 물품은 술, 약, 음식물, 쌀, 콩, 교자(橋子), 담부(擔夫), 어서(御書), 웃, 목화, 시단(柴炭), 유마(由馬), 말 등이다.
- 65) 조선왕조실록 36집 459면 현종실록.
- 66) 조선왕조실록 1집 76면, 1집 90면 태조실록,  
 조선왕조실록 1집 156면, 1집 184면 정종실록,  
 조선왕조실록 1집 246면, 1집 664면, 1집 649면, 1집 685면 태종실록  
 조선왕조실록 3집 456면, 3집 462면 세종실록,  
 조선왕조실록 16집 550면, 16집 633면 중종실록,  
 조선왕조실록 23집 500면 선조실록,  
 조선왕조실록 35집 687면 효종실록,  
 조선왕조실록 36집 495면, 36집 496면, 36집 497면, 36집 501면 현종실록.

궐에 없음을 나타내었다<sup>68)</sup>.

온천에 가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역시 병의 치유를 위한 목욕을 위한 것이다. 온정에서의 목욕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기록<sup>69)</sup>이 아주 많이 있다. 구체적인 병명이 언급된 것을 보면 온천욕은 풍질, 어깨가 아픔, 안질, 눈이 밝지 않음, 손이 저림, 부종, 눈이 흐릇하고 깔깔함, 적취(積翠), 중풍의 마비증세, 각기증(脚氣症), 중퇴증(重腿症), 수족마비, 종기, 습창, 괴증(塊症), 부스럼, 가려움증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특히 숙종실록에 “온수는 본초(本草)에 손발이 오그라들고 손발이 쓰지 못하는 것을 고친다고 말하였으나 화증(火症)을 다스리는 데에는 아주 맞지 않습니다. 또 진액(津液)을 많이 잃

으므로 혈기가 충실하지 않으면 더욱 경솔하게 시험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합니다”라고 기록<sup>70)</sup>하고 있다. 이를 보면 온수는 건강에 좋으나 기운을 빼앗기기도 하므로 주의하여 이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온천에 가기 어려운 경우에는 온천물을 궁으로 가져 와서 목욕을 하는 일<sup>71)</sup>도 있었다. 또한 목욕 후에는 건강관리<sup>72)</sup>에 더욱 신경을 쓰며 육체적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sup>73)</sup>을 치료할 목적으로도 온천을 이용했다는 기록도 보인다.

그리고 서울에서 비교적 먼 곳에 온천이 위치해 있으므로 온천에 간다는 평계를 대고 다른 일을 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퇴를 하는 경우<sup>74)</sup>도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는 다른

- 67) 조선왕조실록 1집 175면 정종실록,  
조선왕조실록 1집 602면 태종실록,  
조선왕조실록 3집 376면, 4집 36면 세종실록,  
조선왕조실록 6집 308면 문종실록,  
조선왕조실록 6집 572면, 6집 575면, 6집 579면, 6집 583면, 6집 618면, 6집 677면 단종실록,  
조선왕조실록 7집 111면, 7집 344면, 7집 345면, 7집 352면, 7집 360면, 7집 363면 세조실록,  
조선왕조실록 9집 445면, 9집 469면, 10집 546면, 11집 190면 성종실록,  
조선왕조실록 14집 219면, 14집 553면, 14집 588면, 16집 320면 중종실록,  
조선왕조실록 23집 480면, 24집 126면 선조실록,  
조선왕조실록 37집 374면, 37집 599면 현종개정실록,  
조선왕조실록 39집 432면, 39집 559면 숙종실록.
- 68) 조선왕조실록 36집 550면 현종실록.
- 69) 조선왕조실록 2집 208면, 2집 212면, 2집 242면 태종실록.  
조선왕조실록 2집 301면, 2집 302면, 2집 312면, 3집 415면, 3집 416면, 4집 333면, 4집 339면, 4집 405면, 4집 409면, 4집 455면, 4집 220면, 4집 223면, 4집 278면, 4집 280면, 4집 332면, 4집 335면, 4집 339면, 4집 416면, 4집 540면, 5집 152면 세종실록,  
조선왕조실록 6집 316면 문종실록,  
조선왕조실록 6집 567면, 6집 582면 단종실록,  
조선왕조실록 7집 704면 세조실록,  
조선왕조실록 10집 94면, 10집 394면, 10집 463면, 12집 219면 성종실록,  
조선왕조실록 14집 417면, 15집 319면 중종실록,  
조선왕조실록 24집 43면, 25집 200면 선조실록, 25집 667면 선수실록,  
조선왕조실록 31집 595면, 32집 438면 광해실록,  
조선왕조실록 34집 122면 인조실록,  
조선왕조실록 36집 306면, 36집 339면, 36집 343면, 36집 567면, 36집 618면, 36집 455면, 36집 457면, 36집 464면, 36집 466면, 36집 468면, 36집 477면, 36집 485면, 36집 517면, 36집 586면, 36집 589면, 36집 590면, 36집 613면 현종실록, 37집 321면, 37집 337면, 37집 436면, 37집 445면, 37집 448면, 37집 453면, 37집 511면, 37집 564면, 37집 618면, 37집 621면, 37집 652면 현개실록,  
조선왕조실록 38집 334면, 40집 239면, 40집 635면 숙종실록,  
조선왕조실록 43집 379면, 44집 40면 영조실록.
- 70) 조선왕조실록 40집 634면 숙종실록.
- 71) 조선왕조실록 40집 635면 숙종실록.  
조선왕조실록 43집 354면, 43집 358면 영조실록.
- 72) 조선왕조실록 2집 314면, 4집 340면, 4집 341면, 4집 406면, 4집 407면, 7집 348면 세종실록,  
조선왕조실록 10집 433면 성종실록,  
조선왕조실록 19집 158면 중종실록,  
조선왕조실록 23집 479면 선조실록,  
조선왕조실록 36집 516면, 36집 623면 현종실록, 37집 622면, 37집 662면 현개실록.
- 73) 조선왕조실록 2집 216면 태종실록,  
조선왕조실록 23집 499면 선조실록.
- 74) 조선왕조실록 3집 279면, 4집 36면 세종실록,  
조선왕조실록 6집 317면, 6집 373면, 6집 393면, 6집 438면, 6집 441면, 문종실록,  
조선왕조실록 6집 632면 단종실록,  
조선왕조실록 7집 344면, 7집 653면 세조실록,  
조선왕조실록 8집 597면, 9집 9면, 9집 437면, 9집 439면, 9집 446면, 12집 401면 성종실록,  
조선왕조실록 13집 30면 연산실록,

나라의 목욕에 대해서도 언급<sup>75)</sup>하고 있는데, 세종실록에는 일본인의 목욕에 대한 기록<sup>76)</sup>이 있는데 큰집에는 각기 욕실(浴室)을 설치하고 있다고 하였다.

### 3) 목욕하는 방법

목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기록은 많지 않으나 숙종실록을 보면 구체적으로 목욕하는 내용<sup>77)</sup>이 나온다. 즉 임금이 온정에 나아가 두부(頭部)를 1백 바가지(250바가지, 2백 바가지, 350 바가지, 4백 바가지, 5백 바가지) 감고 이어서 각부(脚部)를 씻었다(다리 아래를 1각(一刻)<sup>78)</sup>동안 담갔다, 배꼽 아래를 2각(二刻)동안 담갔다, 하부(下部)를 3백 주(籌) 씻었다, 몸을 3백 주 씻었다)고 한다. 즉 머리와 몸은 나누어서 각각 씻고 머리를 먼저 감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용한 물의 양뿐만 아니라 몸을 담구고 있는 시간과 부위(다리 아래, 배꼽 아래)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온정의 이용은 몸을 깨끗이 하기 위한 세정의 목적보다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 이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현종실록에는 기력을 헤아려 천천히 온천에 목욕할 것을 청하였다는 기록<sup>79)</sup>이 있으며, “지금 온천에 새로 짓는 어실(御室)에는 자전(慈殿)께서 입어(入御)하셔야 하고 전에 지은 어실에는 상께서 입어하셔야 합니다. 그

런데 어실은 서쪽에 있고 백관들의 가가(假家)는 동쪽에 있어서 자전의 어실과 너무 가까우니 이 점이 매우 불편합니다”라는 기록<sup>80)</sup>이 있으므로 온천에서 목욕할 때 임금과 중전은 각각 다른 탕을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옛사람은 가을과 겨울 두 계절에는 땀을 내지 아니하였다. 지금 천기(天氣)가 춥고 바람이 높으니 목욕을 하여서는 안 된다<sup>81)</sup>라던가 늦봄의 초기에 해가 높이 떠 오르고 날씨가 바람기가 없으며, 마침 뱃속이 오히려 부족한 듯하면서 많이 먹고 싶지 않을 때를 틈타 나가서 목욕하되, 그때 먼저 단의(單衣)를 따뜻하게 하였다가 뒤 따라 내다가 등위에 덧 걸치며, 즉시 마르고 따뜻한 단의(單衣), 겹의, 유의(襦衣)를 입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 숫자를 더하고 줄이며, 모름지기 탕죽(湯粥)을 마시고 만약 술로써 땀을 내는 데 도움을 받으면서 물에 있으면 냉수(冷水)라도 무방하다라는 기록<sup>82)</sup>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계절, 날씨, 몸의 상태를 파악한 후에 목욕하였음을 알 수 있다.

### (4) 목욕장소와 도구

일상적인 목욕은 냇물, 절, 사신관(使臣館), 저수지, 궁궐, 강, 바다에서 목욕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연의 장소인 냇물<sup>83)</sup>, 저수지<sup>84)</sup>, 강<sup>85)</sup>, 바다<sup>86)</sup>뿐만 아니라 절<sup>87)</sup>,

조선왕조실록 14집 532면, 18집 321면, 19집 15면 중종실록,  
조선왕조실록 21집 429면 선조실록, 25집 547면 선수실록,  
조선왕조실록 32집 532면, 32집 555면, 32집 567면, 33집 145면 광해실록,  
조선왕조실록 35집 513면, 33집 573면 효종실록,  
조선왕조실록 36집 642면 현종실록,  
조선왕조실록 38집 289면, 38집 394면, 40집 29면, 40집 373면, 숙종실록.

75) 조선왕조실록 7집 521면 세조실록,  
조선왕조실록 12집 461면 성종실록,  
조선왕조실록 15집 400면, 15집 539면 중종실록,  
조선왕조실록 35집 100면, 35집 142면 인조실록,  
조선왕조실록 36집 56면 효종실록,  
조선왕조실록 36집 560면 현종실록, 37집 574면 현개실록,  
조선왕조실록 38집 367면 숙종실록,  
조선왕조실록 41집 683면, 42집 312면 영조실록,  
조선왕조실록 45집 636면 정조실록.

76) 조선왕조실록 3집 207면 세종실록.

77) 조선왕조실록 40집 641면, 40집 642면, 숙종실록.

78) 1각은 15분이다.

79) 조선왕조실록 36집 462면 현종실록.

80) 조선왕조실록 36집 479면 현종실록.

81) 조선왕조실록 7집 294면 세조실록.

82) 조선왕조실록 7집 620면 세조실록.

83) 조선왕조실록 1집 3면 태조실록,

조선왕조실록 3집 585면, 4집 158면 세종실록,

조선왕조실록 6집 265면, 6집 479면 문종실록,

조선왕조실록 42집 374면 영조실록.

84) 조선왕조실록 4집 487면 세종실록.

85) 조선왕조실록 16집 28면 중종실록.

86) 조선왕조실록 16집 506면 중종실록.

87) 조선왕조실록 1집 577면 태종실록,

조선왕조실록 10집 334면 성종실록.

사신관<sup>88)</sup>, 궁궐<sup>89)</sup>과 같은 인공적인 장소에서도 목욕한 것을 알 수 있다.

목욕탕(목욕실, 목욕간, 욕실)과 목욕통 등 목욕장소와 도구가 언급된 것은 11건이다. 세종 7년(1425) 성균관 학생들이 습진에 걸리는 일이 많다는 말을 듣고 그 대비책을 명하는데, 선공감(繕工監)으로 하여금 목욕탕과 판동(板櫈) 80을 만들어 주도록 하였다는 기록<sup>90)</sup>이 있다. 이것은 구체적인 목욕탕의 형태를 알 수는 없어도 성균관에 목욕탕이 있었다는 사실과 습질의 치료 목적으로 목욕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은 연산실록에도 기록<sup>91)</sup>되어 있다. 즉 성균관동 안의 철거할 인가를 살펴보게 하는 내용에서 성종조에 유생들이 반수(泮水)를 설치하여 목욕하는 곳으로 삼기를 청하였으니 이 또한 위를 업신여기는 풍습이다라고 전교하자, 반수는 옛날에는 못(澤)이었으나 이제의 반수는 깊은 물이 아니고 마른 내(川)이거늘 반수를 설치하는 것은 그르다고 아뢰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즉 성균관에 공부하는 학생들은 평소에 목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세종 11년(1429) 동활인원(東活人院)에 한증목욕실을 짓기 위한 원조를 원하므로 원조하였다는 기록<sup>92)</sup>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병원에 치료목적의 목욕실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세종 27년(1445) 묵사(墨寺)의 중이 병자의 한증(汗蒸)하고 목욕하는 기구를 수리할 것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는 기록<sup>93)</sup>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절에도 치료목적의 목욕실 또는 목욕기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세종 30년(1448) 염정(鹽井)에 목욕간(沐浴間)을 지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목욕하여 병을 낫게 하기를 청하자 이를 들어주었다는 기록<sup>94)</sup>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염전에 치료목적의 목욕탕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문종 1년(1451) 개성부의 활민원(活

民院)을 수리하여 병자를 모아 놓고서 자원(自願)에 따라 목욕 점질의 방법을 아울러 써 치료하도록 하라는 기록<sup>95)</sup>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병원에 목욕시설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성종 25년(1494) 제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욕재계를 해야 하나 제향하는 각처에 모두 욕구(浴具)가 없어서 겨울에는 반드시 욕실(浴房)을 흙으로 빌라 막고, 다시 물을 데워야만 비로소 목욕을 할 수 있으니, 욕기(浴器)를 갖추도록 원하니 각 제소(祭所)에 신유(申諭)하여 욕기를 갖추게 하라<sup>96)</sup>고 하였다. 이는 제사를 지내는 장소에 욕실이 있었음을 알게 한다.

세종 23년(1441)에 뇌물을 받은 이순동에게 국문하는 자리에서 순동이 “김전이 목욕통(浴桶)을 가져다가 비밀히 그 아우 김돈에게 주고서 어찌하여 도리어 나에게 주었다고 하는가(중략)”라고 하였다<sup>97)</sup>. 이는 목욕통이 뇌물로 주고받을 만큼 귀한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연산 10년(1504)에 왕이 “큰 놋 목욕통 4개를 주조하여 생일잔치까지 대궐로 들이라”고 하였으며<sup>98)</sup>, 11년(1505)에 왕이 경상도, 충공도, 전라도 관찰사에게 “목욕통에 드는 웃진(漆汁)을 바삐 옮려 보내라”고 했다는 기록<sup>99)</sup>이 있다. 이는 궁에서 쓰는 목욕통은 놋으로 만들거나 나무로 만들어 웃칠을 한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숙종 14년(1688)에 윤세희가 이사명을 단핵하는 상소문에서 “~심지어 놋쇠 안반(案盤)과 목욕통(沐浴桶)을 만들어 왔다는 말이 원근에 떠들썩하여~(중략)”라는 내용<sup>100)</sup>이 있으며, 숙종 20년(1694)에 “~목욕은 동이나 대야로 하는 것인데 통(桶)을 만들어 무엇하겠습니까~(중략)”라는 기록<sup>101)</sup>이 있다. 이는 놋쇠 목욕통은 매우 사치스러운 물건이며, 나무로 만든 목욕통은 하찮은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88) 조선왕조실록 2집 181면 태종실록.

89) 조선왕조실록 13집 630면 연산실록,

조선왕조실록 32집 231면 광해실록,

조선왕조실록 34집 338면, 34집 368면 인조실록,

조선왕조실록 35집 565면, 35집 566면, 35집 568면, 35집 685면 효종실록,

조선왕조실록 36집 307면 현종실록, 37집 244면 현개실록.

90) 조선왕조실록 2집 682면 세종실록.

91) 조선왕조실록 13집 644면 연산실록.

92) 조선왕조실록 3집 187면 세종실록에 “과거에 지은 한증목욕실(汗蒸沐浴室)은 너무 좁아서 남녀가 많이 모인다면 병을 치료하지 못한 사람이 꽤 많게 될 것입니다. ~(중략) 남자와 여자의 한증 목욕실을 구분하고자 하여 세 곳을 더 짓고 이내 석탕자(石湯子)를 설치하려고 하나 힘이 모자라 이루지 못하니~(중략) 그대로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다.

93) 조선왕조실록 4집 644면 세종실록.

94) 조선왕조실록 5집 51면 세종실록.

95) 조선왕조실록 6집 412면 문종실록.

96) 조선왕조실록 12집 473면 성종실록.

97) 조선왕조실록 4집 346면 세종실록.

98) 조선왕조실록 13집 631면 연산실록.

99) 조선왕조실록 14집 15면 연산실록.

100) 조선왕조실록 39집 122면 숙종실록.

101) 조선왕조실록 39집 338면 숙종실록.

목욕장소로서 온천에 대한 기록은 매우 많다. 조선 시대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임금부터 백성까지 온천욕을 하였으며, 온천욕이 건강증진에 효능이 높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온천 개발에 조정이 힘을 쏟았던 것<sup>102)</sup>으로 보인다. 즉 세종 때는 온정의 출처를 고하는 자는 양인은 벼슬을 제수하고 천인은 베를 주되, 온정의 품등에 의하여 상을 주라<sup>103)</sup>고 하였고, 실제로 온정이 있는 것을 고한 종에게 겹웃 1령과 면포 3필을 내리기도 하였다<sup>104)</sup>. 또한 온천지로 의심되는 곳은 해빙되기 를 기다려 굴착하여 시험하겠으며 온천을 찾아내어 고하는 자는 상을 줄 것이나 은휘하여 고하지 않으면 그 죄상을 중하게 논죄할 것<sup>105)</sup>이라고 하였으며, 지명을 강등하기<sup>106)</sup>도 하였다. 세종실록에는 구체적으로 온천을 찾았을 때의 상에 대하여 기록<sup>107)</sup>하고 있다. 즉 “온천을 신고한 자에게는 후한 상을 주고 인하여 본음의 칭호를 승격시킬 것이며, 신고한 온천이 가장 신비로운 효험이 있다면 본래 직위가 있는 자는 3등급을 초월하여 관직을 상주고, 백신(白身)이면 7품직을 상주며, 향리(鄉吏)는 이역(吏役)을 면제하고 인하여 8품직을 주며, 역자(驛子) 또는 공사(公私)의 천인은 입역(立役)을 면제하고 자신에 한하여 호세(戶稅)를 면제하며, 만일 물품으로 상을 받으려는 자가 있으면 면포(綿布) 1백필, 또는 쌀 1백석을 준다. 그 다음가는 온천이면 본래 직위가 있는 자는 2등급을 초월해 주고, 백신이면 8품, 향리면 이역의 면제와 아울러 9품직을 상주며, 역자 및 공사의 천인은 입역을 면제할 것이며, 물품으로 상을 받으려는 자가 있으면 면포(綿布) 70필이나 혹은 쌀 70석을 준다. 만약 온천을 신고한 자가 본음의 편박을 입어 안접(安接)하지 못하고 타향으로 이주를 원하는 자는 비옥한 전토를 택하여 주고 부역을 면제하여 완전 보호한다고 명백히 유고하고 탐문해 계달하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온천을 찾는 이유에

대해서도 기록<sup>108)</sup>되어 있는데, “온수가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데 자못 신비로운 효험이 있으므로 내가 이를 구하는 것은 실로 백성을 위하는 것이요~(중략), 혹시 장래에 번거롭고 소요스러운 폐단이 있을까 염려하여 은휘하면 고을의 명칭을 까아 내려서 그 죄를 징계할 것이요, 만일 다른 고을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영영 명칭을 회복시킬 리가 없을 것이니 이런 사의(事意)로써 공문을 보내어 효유하게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세조 때는 황해도 송화현과 문화현 온정의 가용여부를 살피기 위하여 우선 사람들의 목욕을 금지시키라고 기록<sup>109)</sup>하고 있으며, 온정이 있는데는 토기(土氣)가 반드시 따뜻한데, 한 길(丈)이나 땅을 파도 흙이 단단히 열어있어, 천맥(泉脈)이 전혀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종종 때는 온양이 옛날에는 조금 여유있고 번영했었으나 지금은 폐폐하여 쇠잔해졌는데 이는 온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관이 지나간 곳은 거의 모두 같다라고 기록<sup>110)</sup>하고 있다.

세조 때는 온천이 백성들의 전지(田地)에 있으므로 땅을 파서 농사에 해를 끼칠 수가 없고 또 그 고을에 이미 온천이 있었다고 하면서 온천개발을 하지 않았다는 기록<sup>111)</sup>이 있다. 또한 명종 때는 논 가운데서 냉천이 솟아 목욕하기 위해 부녀들이 일시에 몰려와 가마의 수가 30여 채나 되고 전야(田野)에 노숙을 하면서 법석을 떨고 있어 고을에 피해를 입으므로 냉천을 메워 물의 근원을 끊어버리라고 한 기록<sup>112)</sup>이 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하여 온정이 발견되면 무조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질상태를 파악한 후에 적부판결과 온천수의 등급을 정하며, 나름대로 온정을 찾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온정이 있는 곳은 내관이 지나간 곳만큼이나 폐폐해지며, 온정이 있다해도 민폐가 심할 경우에는 개발하지 않았음을

102) 조선왕조실록 3집 603면, 4집 170면, 4집 184면, 4집 188면, 4집 259면, 4집 330면, 4집 333면, 4집 369면, 4집 396면, 4집 437면, 4집 441면, 4집 448면, 4집 457면, 4집 492면, 세종실록, 조선왕조실록 7집 659면, 8집 16면, 8집 17면, 8집 52면, 8집 57면, 8집 161면, 8집 162면, 8집 168면 세조실록.

103) 조선왕조실록 3집 605면 세종실록.  
조선실록 8집 46면 세조실록에는 “~(중략) 온천이 난 곳을 알리는 사람이 있으면 5품계를 뛰어넘어 관직을 제수하고 상 반기를 자원하는 사람은 면포 2백 필을 주고 천민의 신분을 면하려는 사람도 또한 들어주고 그것을 여러 고을에 널리 효유하도록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104) 조선왕조실록 8집 16면 세조실록.

105) 조선왕조실록 4집 187면 세종실록.

106) 조선왕조실록 4집 171면, 4집 192면 세종실록.

107) 조선왕조실록 4집 142면 세종실록.

108) 조선왕조실록 4집 166면 세종실록.

109) 조선왕조실록 8집 25면 세조실록.

110) 조선왕조실록 15집 49면 중종실록.

111) 조선왕조실록 7집 396면 세조실록.

112) 조선왕조실록 20집 657면 명종실록.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몇몇 유명한 온천지에는 행궁(行宮)<sup>113)</sup>이 있었다. 온천에 있는 행궁은 현재의 별장과 같은 기능을 하면서 또 다른 궁궐로 써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생각된다. 특히 대행대왕대비가 온양의 행궁에서 돌아가셨다거나<sup>114)</sup>, 상왕이 임금의 온정 행차를 위로하기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는 기록<sup>115)</sup>이 있으며, 세종실록을 보면, 예조에서 서울과 지방의 온정에서 병든 사람을 구요(求療)하는 사의(事宜)를 조목별로 나열하여 아뢰고 있다<sup>116)</sup>. 따라서 온천은 요양원의 역할을 하였으므로 구호소(救護所)의 역할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변방의 온정에는 이웃 국가의 국민들도 온천을 이용했다는 기록<sup>117)</sup>이 있으며, 특히 동래온정의 경우에는 왜인이 목욕하기 위해 머물렀다는 기록<sup>118)</sup>이 자주 있어 외교의 장소로도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온천에는 관리를 위해 관리인을 파견하거나 거주하면서 관리하는 관리인을 두고, 온정에 오는 사람과 온정의 건물을 관리하였으며<sup>119)</sup>, 이를 잘 수행한 사람에게는 상을 내리기도 하였다<sup>120)</sup>. 현종실록을 보면, 온양 행궁의 건물에 대하여 기록<sup>121)</sup>되어 있는데, 6칸 8작의 어실은 온천 서쪽에 있고 온천 방은 8칸이며, 나머지 초사(草舍)를 합하면 1백여 칸이었다고 한다.

이상의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목욕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조선왕조실록에서 가장 많은 목욕관련 기록을 남긴 왕은 세종대왕이다. 조선시대에는 위생적인 측면, 건강을 위한 측면, 몸단장을 위한 경우에 일상적인 목욕을 하며, 제례 전에는 반드시 목욕재계를 할 정도로

기도나 의례를 위한 목욕은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임금부터 백성까지 온천욕을 하였으며, 온천욕이 건강증진에 효능이 높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온천 개발에 조정이 힘을 쏟았다. 목욕을 하는 방법으로 목욕순서, 목욕시간, 목욕부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계절, 날씨, 몸의 상태를 파악한 후에 목욕하였다. 그리고 목욕장소는 자연의 장소인 냇물, 저수지, 강, 바다뿐만 아니라 절, 사신관, 궁궐과 같은 인공적인 장소에서도 목욕을 하였으며, 특히 온천지에는 목욕을 위한 목욕탕을 건설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 III. 결론

본 연구는 우리의 입욕양식에 맞는 목욕공간의 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한 선행연구로써 한국인의 목욕의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목욕관련 내용 2238건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목욕관련 기록은 12건이 있었다.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삼국시대에는 청결, 치료, 미용의 목적과 의례적 행위로서 목욕을 하였으며, 온천, 빗물, 강, 못, 목욕통을 이용하여 목욕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고려사에 목욕관련 기록은 60건이 있었다.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고려시대에는 삼국시대의 목욕의식과 같은 의례적이고 치료목적의 행위를 포함

113) 행궁이 있는 온정은 온양행궁, 이천행궁, 고성온정, 과천(果川)행궁이다.

세종실록(조선왕조실록 5집 153면)에 따르면 배천온천에 행궁 및 녹가성을 지울 것을 청하였으나, 황해도 백성에게 폐를 준다고 임금이 불허하였다. 또 세조실록(조선왕조실록 7집 664면)에 따르면 온양의 옥사(屋舍)는 완전히 갖추어져 있고, 고성, 배천, 해주는 옥사가 없으며, 동래는 관사(館舍)가 완전히 좋으나 고쳐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거동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는 보면 동래온정에도 행궁까지는 아니더라도 관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후 세조12년(조선왕조실록 8집 8면)에 고성에 온정행궁을 수축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고성온정에도 행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14) 조선왕조실록 10집 448면, 10집 469면 성종실록.

115) 조선왕조실록 1집 664면 태종실록.

116) 조선왕조실록 3집 94면 세종실록.

117) 조선왕조실록 31집 506면 광해실록.

118) 조선왕조실록 4집 133면, 4집 264면 세종실록,

조선왕조실록 6집 247면 문종실록,

조선왕조실록 6집 583면, 6집 599면 단종실록,

조선왕조실록 11집 666면 성종실록,

조선왕조실록 17집 190면 중종실록,

조선왕조실록 36집 707면, 37집 16면 현종실록.

119) 조선왕조실록 1집 90면 태조실록,

조선왕조실록 2집 429면, 3집 89면, 3집 464면, 4집 338면, 4집 339면, 4집 342면, 4집 351면, 4집 358면, 4집 382면, 4집 407면, 4집 408면, 4집 418면 세종실록,

조선왕조실록 7집 465면, 7집 710면, 8집 58면, 8집 157면, 8집 208면 세조실록,

조선왕조실록 8집 634면, 10집 430면 성종실록,

조선왕조실록 36집 461면, 36집 486면 현종실록,

조선왕조실록 43집 379면 영조실록.

120) 조선왕조실록 36집 488면, 36집 519면, 36집 525면, 36집 536면, 36집 570면, 36집 571면, 현종실록.

121) 조선왕조실록 36집 461면 현종실록.

하면서 보다 일상생활행위로서 목욕이 자리를 잡았음을 알 수 있으며, 온천, 절, 집에서 목욕하고 향과 수건을 사용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 목욕관련 기록은 2166건이 있었다.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조선시대에는 일상적인 목욕은 위생적인 측면, 건강을 위한 측면, 몸단장을 위한 경우에 하였으며, 제례 전에는 반드시 목욕제례하였으며, 병의 치유를 위한 온천욕이 성행하였다. 목욕을 하는 방법으로 목욕순서, 목욕시간, 목욕부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계절, 날씨, 몸의 상태를 파악한 후에 목욕하였다. 그리고 목욕장소는 자연의 장소인 냇물, 저수지, 강, 바다뿐만 아니라 절, 사신관, 궁궐과 같은 인공적인 장소에서도 목욕을 하였으며, 특히 온천지에는 목욕을 위한 목욕탕을 건설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옛 문헌을 통하여 한국인의 목욕의식을 살펴본 결과, 삼국시대에는 의례와 치료를 목적으로 목욕을 하였으며, 고려시대에는 일상생활행위로 목욕이 자리잡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치료를 위한 온천욕, 기도나 의례를 위한 목욕제례, 위생과 몸단장을 위한 일상욕을 하였으며 목욕방법을 정하고 목욕도구를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삼국시대에는 불교가 한반도에 도입되면서 불교에서의 목욕의 의미, 즉 목욕을 함으로써 마음의 때까지 씻어낸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에는 불교를 국교(國敎)를 정하면서 삼국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목욕제례의 의미뿐만 아니라 일반서민들까지 목욕을 즐기면서 목욕인 일상생활행위로 자리잡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유교사상이 승상되면서 불교의식으로서의 목욕 풍습은 많이 줄었지만(이규태, 1983), 조상을 모시는 제사 때에는 반드시 목욕을 하였으며(전완길, 1995), 온천의 개발로 인하여 온천욕의 대중화가 이루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목욕이 일상생활행위로 자리를 잡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대상인 옛 문헌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목욕공간에 대한 내용이 매우 부족하여 구체적인 형태를 알 수 없었다. 다만 목욕탕을 사용하였다거나 행궁에 목욕탕이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으므로 우리의 입욕양식에 맞는 목욕공간의 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주제어 :** 목욕문화,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 참 고 문 헌

- 누리미디어, 국학데이터베이스(<http://www.krpia.co.kr>), 2004.
- 동서문화, 동서한국대백과사전, vol. 10, 1995.
- 백영흠, 안옥희, 한국주거역사와 문화, 기문당, 2003.
- 성정원, 목욕행태를 고려한 대중목욕탕 리노베이션, 영남 대 석사학위논문, 2000.
- 윤장섭, 한국의 건축, p.392-393,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 이규태, 개화백경 4, 신태양사, 1983.
- 이영심, 신경주, 서울지역 아파트 욕실평면의 변천, 한국 주거학회지, 6(2), 1995.
- 이희봉, 주거론: 주거와 문화, 건축학전서 vol.3, 대한건축 학회, 1997.
- 전완길, 한국생활문화 100년, 장원, 1995.
- 조명은, 아파트 거주자의 위생생활행위 실태분석,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탁순애, 아파트의 욕실공간에 관한 연구,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2004. 01. 26 접수; 2004. 03. 22 채택)